입양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 (김미애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5360 발의연월일: 2022. 4. 21.

발 의 자:김미애·조명희·박대수

태영호 · 최승재 · 하태경

백종헌・황보승희 • 윤두현

정경희 · 김선교 · 홍석준

조오섭 · 최재형 의원

(14인)

제안이유

현행법은 국내입양 우선 원칙을 규정하고 있음. 이는 양자가 될 아동과 양부모가 비슷한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있을 경우 아동이 새로운 가정에서 보다 안전하고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음. 따라서 국가가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내입양 활성화 정책을 수립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.

한편, 우리나라가 2013년에 서명한 「국제입양에서 아동의 보호 및 협력에 관한 협약」은 국가의 입양절차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동시 에, 인가된 단체를 통하여 입양절차를 효율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. 입양업무 일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것 은 업무의 비효율성, 입양절차의 지연으로 입양아동의 복리를 저해할 수 있음. 이에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가 국내입양 활성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·시행하도록 하고,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입양 기관 및 관련 단체에게 입양의 일선집행업무를 위탁할 수 있게 하여, 국내입양을 활성화하고 보다 효율적으로 입양절차를 진행하고자 함.

주요내용

- 가. 법률의 제명을 「국내입양 활성화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」으로 개정함.
- 나. 법 적용대상을 보호대상 아동으로 한정하며, 제정 목적을 국내입 양의 활성화를 통한 양자가 될 아동의 권익과 복지 향상으로 함(안 제1조).
- 다. 친생부모의 학대나 방임으로 인해 태어난 가정에서 자라기 곤란한 아동에게는 아동의 권익 증진을 위하여 다른 새로운 가정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함(안 제3조제2항).
- 라. 국가가 입양가정에 대한 사회적 편견 및 차별을 해소하는 정책을 수립하도록 함(안 제3조제4항).
- 마. 입양이 성립된 이후 다시 양자가 될 아동과 친생가족이 만나는 경우에는 당사자 상호동의 및 사생활의 자유 보장 원칙을 침해해서는 아니 됨을 규정함(안 제3조제5항).
- 바. 보건복지부장관이 5년 단위로 국내입양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도록 하여 국내입양을 활성화하도록 함(안 제8조).

- 사. 보건복지부장관, 시·도지사 및 아동권리보장원장이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국내입양활성화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함(안제9조).
- 아. 가정법원이 입양허가를 결정하기 전에 아동의 복리증진에 적합한 지를 판단하여 입양될 아동을 양부모가 될 사람에게 임시로 인도하 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함(안 제14조).
- 자. 가정법원이 입양허가 여부를 6개월 이내에 결정하도록 하여, 입양절차가 보다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함(안 제15조).
- 차. 친생부모가 3년 이상 부양의무를 불이행하거나 면접 교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친생부모의 동의 없이 입양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함(안 제16조).
- 카.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친생부모가 입양동의를 숙려하기 위하여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에 숙식, 의료 지원 등을 지원해야 함(안 제17조).
- 타. 보건복지부장관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입양기관이 양자 또는 양부모가 될 사람의 자격에 대한 사전조사 및 보고서 작성, 입양동의 등에 관한 상담 및 숙려의 지원, 입양 신청, 아동의인도 및 사후서비스제공 등의 업무를 입양기관과 관련 법인·단체에 위탁할 수 있음(안 제37조).

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김미애의원이 대표발의한 「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안」 (의안번호 제15361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 야 할 것임. 법률 제 호

입양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

입양특례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국내입양 활성화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

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 이 법은 보호대상아동의 국내입양(入養)에 관한 요건 및 절차 등에 대한 특례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내입양을 활성화하고 양자(養子)가 되는 아동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- 1. "아동"이란 「민법」상 미성년자를 말한다.
- 2. "보호대상아동"이란 「아동복지법」 제3조제4호에 따른 보호대상 아동을 말한다.
- 3. "입양아동"이란 이 법에 따라 입양된 아동을 말한다.
- 4. "상거소(常居所)"란 주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당기간 이 상을 거주한 장소를 말한다.

- 5. "국내입양"이란 양부모가 될 사람과 아동의 상거소 및 국적이 모두 대한민국으로, 입양의 결과로 아동의 상거소 및 국적이 다른 국가로 변경되지 않는 입양을 말한다.
- 6. "부양의무자"란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조제5호에 따른 부양의무자를 말한다.
- 제3조(국가 등의 책무) ① 모든 아동은 가정에서 건강하게 자라야 한다.
 -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그가 태어난 가정에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하고 부모의 학대나 방임으로 인해 태어난 가 정에서 자라기 곤란한 아동에게는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다른 영 구적인 가정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.
 - ③ 모든 국민은 입양아동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하며. 입양아동에게 차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 -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건전한 입양문화를 조성하고 보호대상아동의 국내입양을 활성화하며, 아동이 입양 후의 가정생활에 원만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입양가정에 대한 사회적 편견 및 차별을 해소하는 등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시하여야 한다.
 - 1. 입양정책의 수립, 시행 및 홍보
 - 2. 입양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
 - 3. 입양 및 사후관리 절차의 구축 및 운영

- 4. 입양아동 및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
- 5. 입양 후 원만한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사회복지서비스 제공
- 6. 입양아동 및 입양가정에 대한 사회적 편견 및 차별 해소 정책의 수립 및 시행
- 7. 입양에 대한 교육 및 홍보
- 8.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사항
-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자가 된 사람과 친생가족 간의 만남을 위하여 당사자 상호동의 및 사생활 자유의 보장 원칙 하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.
- 제4조(입양의 원칙) 이 법에 따른 입양은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.
- 제5조(비영리 운영의 원칙)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입양과 관련한 기관 또는 개인이 이 법에 따른 입양으로 인하여 부당한 재정적 이익 등을 취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.
- 제6조(입양의 날) ① 건전한 입양문화의 정착과 국내입양의 활성화를 위하여 5월 11일을 입양의 날로 하고, 입양의 날부터 1주일을 입양주간으로 한다.
 -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입양의 날 취지에 적합한행사 등 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- 제7조(국내입양 우선 추진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입양의뢰 된 아동의 양부모가 될 사람을 국내에서 찾기 위한 시책을 최우선적으

로 시행하여야 한다.

-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에 대한 보호 의무와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시설보호를 줄여나가는 노력을 해야 한다.
- ③ 시·도지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모든 시설보호 아동에 대하여 현재 양육방식의 적정성을 최소 3개월 단위로 평가하여 원 가정과의 재결합을 지원하여야 한다.
-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조치에도 불구하고 양부 모가 될 사람을 국내에서 찾지 못한 경우에 한하여 「국제입양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국제입양을 추진할 수 있다.

제2장 국내입양 활성화정책의 수립 및 시행

- 제8조(국내입양활성화 기본계획의 수립·시행 등)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내입양의 활성화를 위하여 입양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5년마다 국내입양활성화 기본계획(이하 "기본계획"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 -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 - 1. 국내입양활성화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
 - 2. 이전 기본계획에 관한 분석 및 평가
 - 3. 시설보호 감축을 위한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 방법
 - 4. 입양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및 입양아동·입양가정에 대한 차

별방지를 위한 주요 정책

- 5. 국내입양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
- 6.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·시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
-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을 제10조에 따른 입양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.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확정된 기본계획을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(이하 "시·도지사"라 한다) 및 「아동복지법」제10조의2에 따른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.
- ④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·시행 및 평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9조(국내입양활성화 시행계획의 수립·시행 등) ① 보건복지부장관, 시·도지사 및 아동권리보장원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국내입양활 성화 시행계획(이하 "시행계획"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 - ② 시·도지사 및 아동권리보장원장은 다음 해 시행계획과 지난해 추진실적 및 평가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,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를 종합하여 제10조에 따른 입양정책조정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 - ③ 그 밖에 시행계획의 수립·시행 및 평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10조(입양정책조정위원회) ① 국내입양촉진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

심의·조정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입양정책조정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
-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조정한다.
- 1. 제8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, 추진실적 및 평가결과에 관한 사항
- 2. 제9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, 추진실적 및 평가결과에 관한 사항
- 3. 양부모가 될 사람의 교육 과정의 기준 및 내용 선정
- 4. 그 밖에 국내입양활성화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
- 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된다.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.
- 1. 보건복지부 및 산하기관 소속 공무원 중 위원장이 지명한 10명이내 위원
- 2. 입양 관련 단체의 장이나 입양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성한 사람 중 위원장이 위촉한 위원으로 과반 이상 구성
- ④ 위원회는 관계 행정기관에 대해 소속직원의 출석·설명과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
-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외에 위원회의 심의,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3장 국내입양의 요건 및 효력

- 제11조(양자가 될 자격 등) ① 이 법에 따라 양자가 될 아동은 보호대 상아동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.
 - 1.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사람으로서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 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이 부양의무자를 확인할 수 없어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보장시설(이하 "보장시 설"이라 한다)에 보호의뢰한 아동
 - 2. 부모(부모가 사망이나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직계존속을 말한다) 또는 후견인이 입양에 동의하여 보장시 설 또는 제22조에 따른 입양기관에 보호의뢰한 아동
 - 3. 법원에 의하여 친권상실의 선고를 받은 사람의 자녀로서 시·도지 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보장시설 또는 가정위탁센터에 보호 의뢰한 아동
 - 4. 그 밖에 부양의무자를 알 수 없는 경우로서 시·도지사 또는 시 장·군수·구청장이 보장시설 또는 가정위탁지원센터에 보호의뢰한 아동
 - ②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양자가 될 아동에 대하여 상 담, 건강검진, 심리검사 및 가정환경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그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
 - ③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작성한 보고서를 「아동복지법」 제15조의2의 아동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한다.

- 제12조(양부모가 될 자격 등) ① 이 법에 따라 양부모가 될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.
 - 1. 양자를 안정적으로 양육하기에 충분한 재산 등 경제적 능력이 있을 것
 - 2. 양자에 대하여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그 에 상응하는 양육과 교육을 할 수 있을 것
 - 3. 아동학대·가정폭력·성폭력·마약 등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 경력이 없을 것
 - 4. 약물중독 등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강상의 사유가 없을 것
 - 5. 혼인한 경우 부부 공동으로 입양할 것
 - 6. 그 밖에 양자가 될 아동의 복지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요건을 갖출 것
 - ② 양부모가 될 사람은 양자가 될 아동이 복리에 반하는 직업이나 그 밖에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직업에 종사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.
 - ③ 양부모가 될 사람은 입양의 성립 전에 입양기관 등으로부터 보건복지부렁으로 정하는 소정의 교육을 마쳐야 한다.
 - ④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양부모가 될 사람에 대하여 상담, 건강검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사를 실시하고 그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
- 제13조(입양의 신청 등) ① 이 법에 따라 양부모가 될 사람은 보건복

지부장관에게 입양을 신청하여야 한다.

-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입양을 신청한 사람(이하 "신청 인"이라 한다)이 제12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 여 상담, 가정환경 조사, 심리검사 등을 실시하고 그에 대한 보고서 를 작성하여야 한다.
- ③ 신청인은 제2항에 따른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여야 하며 사실을 왜곡·은폐·과장하거나 거짓 서류를 제출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,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, 입양기관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.
-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입양의 신청 방법·절차 및 보고서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- 제14조(임시인도결정) ① 가정법원은 양부모가 될 사람의 신청이 있는 경우 제15조에 따른 입양허가를 결정하기 전에 아동의 복리증진에 적합한지를 판단하여 입양될 아동을 양부모가 될 사람에게 임시로 인도하는 결정(이하 "임시인도결정"이라 한다)을 할 수 있다. 이 경우 신청이 접수된 때부터 1주일 이내에 인도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.
 - ② 가정법원은 임시인도결정을 하는 경우 제15조제1항제1호부터 제

5호까지의 서류를 갖추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가정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가사조사관에게 입양 동기, 양육능력 및 양육 환경 등에 관한 조사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.

- ③ 제1항에 따른 임시인도 여부의 결정에 대하여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.
- ④ 가정법원은 양부모가 될 사람의 학대·유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임시인도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. 이 경우 가정법원은 아동을 보호할 자를 지정하고 양부모가 될 사람에게 즉시아동의 인도를 명령하여야 한다.
- ⑤ 가정법원은 친생부모 또는 법정대리인이 제16조제4항에 따라 동의 철회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임시인도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.
-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가정법원이 임시인도결정을 한 때부터 제15조 제1항에 따른 입양허가를 할 때까지 아동 복리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렁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의 적응 및 양육 상태를 정기적으로 관찰하고 보고서를 작성하여 가정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.
- ⑦ 그 밖에 임시인도결정의 신청 절차, 심리 및 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.
- 제15조(가정법원의 허가) ① 제11조제1항에 정한 아동을 입양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 - 1. 양자가 될 아동의 출생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

- 2. 제11조제2항에 따른 양자가 될 아동에 대한 보고서
- 3. 제12조제4항에 따른 양부모가 될 사람에 대한 보고서
- 4. 제16조제1항에 따른 동의·승낙 서면 및 제2항에 따른 동의 서면
- 5. 그 밖에 아동의 복리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
- ② 가정법원은 양자가 될 아동의 복리를 위하여 6개월 이내에 허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.
- ③ 가정법원은 양자가 될 아동의 복리를 위하여 양부모가 될 사람의 입양의 동기와 양육능력,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제1항의 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. 이 경우 그 이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- ④ 제3항에 따른 기각결정에 대하여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따라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.
- ⑤ 제1항에서 정한 가정법원의 입양허가에 필요한 서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서류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·확인한 후이를 발급하되, 서류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- ⑥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 절차, 심리 및 허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.
- 제16조(입양의 동의 등) ① 제11조에 따른 아동을 입양하려면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승낙을 받아야 한다.
 - 1. 양자가 될 아동이 13세 이상인 경우(제15조에서 정한 가정법원의

입양허가 전에 13세에 달한 경우에도 같다): 법정대리인의 동의와 양자가 될 아동의 승낙

- 2. 양자가 될 아동이 13세 미만인 경우: 법정대리인의 승낙
- ② 제11조에 따른 아동을 입양하려면 친생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.
- 1. 제1항에 따른 법정대리인이 친생부모인 경우
- 2. 친생부모가 친권상실의 선고를 받은 경우
- 3. 친생부모의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
- ③ 가정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동의가 없는 경우에도 제15조제1항에 따른 입양 의 허가를 할 수 있다. 제1호의 경우 가정법원은 법정대리인을 심문 하여야 한다.
- 1. 법정대리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 또는 승낙을 거부하는 경우. 다만, 법정대리인이 친권자인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3호의 사유가 있어야 한다.
- 2. 친생부모가 자신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3년 이상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면접교섭을 하지 아니한 경우
- 3. 친생부모가 자녀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 밖에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친 경우
- ④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·승낙, 제1항제2호에 따른 승낙 또는 제2

항에 따른 동의는 제15조에 따른 가정법원의 입양허가가 있기 전까지 철회할 수 있다.

- ⑤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·승낙, 제1항제2호에 따른 승낙, 제2항에 따른 동의 및 제4항에 따른 철회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따라 서면으로 한다.
- 제17조(입양동의 등의 요건 등) ① 제16조제1항에 따른 동의·승낙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동의(이하 "입양동의등"이라 한다)는 아동의 출생일부터 1주일이 지난 후에 이루어져야 한다.
 - ② 입양동의 등의 대가로 금전 또는 재산상의 이익, 그 밖의 반대급부를 주고받거나 주고받을 것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.
 - ③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6조제1항에서 정한 입양 승낙 전에 입양될 아동에게 입양승낙의 효과 등에 관한 충분한 상담을 제공하여야 한다.
 - ④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6조제2항에서 정한 입양동의 전에 친생부모에게 아동을 직접 양육할 경우 지원받을 수 있는 사항 및 입양동의의 효과 등에 관한 충분한 상담을 제공하여야한다.
 - ⑤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친생부모가 제16조제2항의 입양동의를 숙려하기 위하여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친생부모에 게 입양동의 등의 전까지 숙식, 의료 등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.

- ⑥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상담 내용·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 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- 제18조(입양의 효과) 이 법에 따라 입양된 아동은 「민법」상 친양자 와 동일한 지위를 가진다.
- 제19조(입양의 효력발생) 이 법에 따른 입양은 가정법원의 인용심판확정으로 효력이 발생한다. 이 경우 양부모 또는 양자는 가정법원의 허가서를 첨부하여 「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친양자 입양 신고를 하여야 한다.
- 제20조(입양의 취소) ① 입양아동이 제16조제1항에 따라 승낙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입양아동의 친생부모가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하여 제16조제2항에 따른 입양의 동의를 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입양아동 또는 친생부모는 가정법원의 인용심판이 확정된 날로부터 6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입양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.
 - ② 가정법원은 입양의 취소 청구에 대한 인용 판결이 확정되거나 심판의 효력이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뜻을 보건복지부장관, 아동권리보장원의 장 및 친생부모·양부모·입양아동이 거주하는 지방 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한다.
- 제21조(파양) ① 양부모, 양자,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 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파양을 청구할 수 있다.
 - 1. 양부모가 양자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 밖에 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하는 경우

- 2. 양자의 양부모에 대한 패륜행위로 인하여 양자관계를 유지시킬 수 없게 된 경우
- ② 가정법원은 파양이 청구된 아동이 13세 이상인 경우 입양아동의 의견을 청취하고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.
- ③ 가정법원은 파양의 청구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거나 심판의 효력이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뜻을 보건복지부장관, 아동권리보장원의 장 및 친생부모·양부모·입양아동이 거주하는 지방자치단체의장에게 통보한다.

제4장 입양기관 등

- 제22조(입양기관) ① 입양기관을 운영하려는 자는 「사회복지사업법」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 다만, 국내입양만을 알선하려는 자는 시·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 - ② 입양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 - 1. 양부모가 될 사람에게 입양제도 설명 등 입양 관련 서비스 제공
 - 2. 국내입양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
 - 3. 친생가족 찾기 및 입양가정에 대한 사후서비스 제공
 - 4. 제11조제1항에 따른 양자가 될 아동에 대한 보호 및 양육
 - 5. 제12조제3항에 따른 양부모가 될 사람에 대한 교육

- 6. 그 밖에 국내입양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, 시·도지사 또는 시 장·군수·구청장으로부터 위탁받은 사항
- ③ 입양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·도지사에게 신고하여 야 한다.
- ④ 외국인은 입양기관의 장이 될 수 없다.
- ⑤ 입양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는 입양아동의 인권을 보호하고 건전한 입양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.
- ⑥ 입양기관의 시설 및 종사자의 자격 기준과 허가 및 변경 신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렁으로 정한다.
- 제23조(입양기관의 의무) ① 입양기관의 장은 제22조제2항의 업무수행 내용을 매년 해당 시·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 - ② 입양기관의 장은 양자가 될 아동의 권익과 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 - ③ 입양기관의 장은 입양이 성립된 후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양아동과 그에 관한 기록 등을 양부모 또는 양부모가 될 사람에게 건네주고, 그 결과를 시·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- 제24조(입양기관의 장의 후견직무) ① 입양기관의 장은 입양을 알선하기 위하여 보장시설의 장, 부모 등으로부터 양자 될 아동을 인도받

았을 때에는 그 인도받은 날부터 입양이 완료될 때까지 그 아동의 후견인이 된다. 다만, 양자가 될 아동에 대하여 법원이 이미 후견인 을 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② 제1항의 경우에 양자로 될 아동을 인도한 친권자의 친권행사는 정지된다. 다만, 친권자가 제16조제4항에 따라 입양의 동의를 철회 한 때에는 다시 친권을 행사할 수 있다.

제5장 입양아동 등에 대한 복지 지원 및 보호

- 제25조(아동의 인도) 아동의 친생부모, 후견인 또는 그 외 적법한 절차에 따라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사람은 제14조에 따른 법원의 임시인도결정과 제15조에 따른 법원의 입양허가 결정 후 입양될 아동을 양부모가 될 사람에게 인도한다.
- 제26조(사후서비스 제공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입양이 성립된 후 1년 동안 양부모와 양자의 상호적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후서 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.
 - 1. 양부모와 양자의 상호적응상태에 관한 관찰 및 이에 필요한 서비스
 - 2. 입양가정에서 입양아동의 건전한 성장을 위하여 양육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
 - 3. 입양가정이 수시로 상담할 수 있는 창구의 개설 및 상담요원의

배치

- 4. 입양가족 간의 정보 공유와 상호 협력 등에 필요한 서비스
-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후서비스를 제 공한 이후에 아동적응보고서를 작성하여 아동통합정보시스템에 등 록하여야 한다.
- 제27조(양육보조금 등의 지급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라 입양된 아동이 건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양육수당, 의료비, 아동교육지원비, 그 밖의 필요한 양육보조금(이하 "양육보조금등"이라 한다)을 지급할 수있다.
 -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입양가족 간의 정보 공유와 상호 협력 등을 위한 모임이나 단체의 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다.
 -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양육보조금의 지급을 빌미로 부당하게 가정조사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없다.
 - ④ 제1항에 따른 양육보조금 등의 지급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의 기준, 절차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28조(입양알선이 곤란한 사람 등의 보호)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 수·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에 대해서 「아동복지법」 제15조에 따른 보호조치를 지체 없이 하여야 한다.
 - 1.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라 보호의뢰된 아동으로서 입양알선이 곤란한 아동

2. 이 법에 따른 입양이 취소되거나 파양을 선고받은 아동

제6장 입양아동 등에 대한 정보의 공개

- 제29조(입양기록의 보존 및 이관 등) ① 보건복지부장관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, 아동권리보장원의 장, 입양기관의 장, 입양 전아동을 보호한 「아동복지법」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의 장은 입양업무에 관한 사항을 기록(전자문서 형태의 기록을 포함한다)하고 아동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.
 - ② 제1항에 따른 입양업무에 관한 기록(이하 "입양기록"이라 한다) 은 아동권리보장원에 제공되어야 하며, 아동권리보장원은 이를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.
 - ③ 입양기관의 장, 입양 전 아동을 보호한 아동복지시설의 장은 폐업·휴업 신고를 하는 경우 입양기록을 아동권리보장원으로 이관하여야 한다. 다만, 휴업 신고를 하는 경우 휴업 예정일 전까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입양기록을 직접보관할 수 있다.
 - ④ 제1항에 따른 입양기록의 범위 및 내용, 제2항에 따른 입양기록의 제공 및 영구보존, 제3항에 따른 이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- 제30조(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) ① 아동권리보장원 원장은 업

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,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 및 입양기관 등 관계기관에 대하여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수 있다.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에 따라야 한다.

- ② 제1항에 따라 아동권리보장원에 제공된 자료는 「아동복지법」 제10조의2제2항에서 정한 업무수행을 위한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.
- 제31조(입양정보의 공개 등) ① 이 법에 따라 양자가 된 사람은 아동 권리보장원, 입양기관 또는 아동복지시설이 보유하고 있는 자신과 관련된 입양정보의 공개를 청구(이하 "정보공개청구"라 한다)할 수 있다. 다만, 이 법에 따라 양자가 된 사람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양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
 - ② 정보공개청구를 받은 자는 입양아동의 친생부모의 동의를 받아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. 다만, 친생부모가 정보의 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친생부모의 인적사항을 제외하고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.
 - ③ 제2항의 단서에도 불구하고 친생부모가 사망이나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친생부모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입양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.
 -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정보공개청구의 대상이되는 정보의 범위, 신청 방법과 절차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

령령으로 정한다.

제32조(비밀유지의 의무) 아동권리보장원, 입양기관 또는 보장시설에 종사하는 사람 또는 종사하였던 사람은 입양업무 또는 입양 전 아동보호 업무를 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. 다만, 제31조에 따라 입양정보를 공개하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.

제7장 지도·감독 등

- 제33조(지도·감독 등) ① 보건복지부장관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 구청장은 입양기관을 운영하는 자에 대하여 소관 업무에 관하여 필 요한 지도·감독을 하며,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입양기관의 사무소 또는 시설에 출입하여 검사하거나 질문하게 할 수 있다.
 - ② 제1항에 따라 검사나 질문을 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.
- 제34조(허가의 취소 등)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입양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22조제2항에 따른 업무수행의 정지를 명하거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. 다만, 제1호의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.
 - 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

- 2. 제22조제2항에 따른 업무 범위를 벗어난 업무를 수행한 경우
- 3. 제22조제6항에 따른 시설 및 종사자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
- 4. 제23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
- 5. 정당한 사유 없이 제33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또는 조사를 거부·방해하거나 기피하였을 경우
- 6. 제36조에 따른 비용보조 이외에 정당하지 않은 비용을 청구하거 나 수수한 경우
- 7.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
-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행정처분의 사유 와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
제8장 보칙

- 제35조(청문) 시·도지사는 제34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취소하려면 청 문을 하여야 한다.
- 제36조(비용의 보조)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2조제1항에 따른 입양 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및 제22조제2항에 따른 사업 수행에 필 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여야 한다.
- 제37조(권한의 위임·위탁) ①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·

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·도지 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.

- ② 보건복지부장관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양기관 또는 관련 법인·단체에 제11조제2항·제3항, 제12조제4항, 제13조제1항부터 제2항까지, 제14조제6항, 제17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,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 업무를 위탁할 수있다.
- 제38조(「민법」과의 관계) 입양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히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「민법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- 제39조(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) 아동권리보장원의 임직원 및 입양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는 「형법」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.

제9장 벌칙

- 제40조(벌칙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 - 1. 제15조를 위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입양을 행한 사람
 - 2. 제17조제2항을 위반하여 입양동의 등의 대가로 금전 등을 주고받 거나 주고받을 것을 약속한 사람

- 3. 제22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입양에 관한 업무를 행한 사람
- 4. 제32조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
-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- 1. 제14조에 따른 가정법원의 임시인도결정을 받지 아니한 채 양자 가 될 아동을 양부모가 될 사람에게 인도하거나 인도받은 사람
- 2.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 없이 허가사항 중 중요 사항을 변경한 사람
- ③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거짓을 진술하거나 거짓 서류를 제출한 사람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- 제41조(양벌규정) 법인의 대표자,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, 사용인, 그 밖의 종사자가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0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(科)한다. 다만,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
부 칙

- 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- 제2조(입양정보의 공개에 관한 적용례) 제3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양자가 된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.
- 제3조(입양기록의 보존 및 이관 등에 관한 적용례) 입양기록의 아동통합정보시스템 입력, 보존 및 이관 등에 관한 제29조의 개정규정은이 법 시행 전에 입양기관 등이 기록한 입양기록에 대하여도 적용하다.
- 제4조(행정처분에 관한 적용례) 이 법은 이 법 시행 전에 행하여진 위 반행위와 그 행정처분에 대하여도 적용한다. 다만,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행위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- 제5조(일반적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결정· 처분·절차·조사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.
- 제6조(가정법원의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일 당시 종전의 「입양특례법」에 따라 가정법원에 입양허가 신청을 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.
- 제7조(다른 법률의 개정) ①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 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 - 제23조제1항제3호 중 "「입양특례법」 제2조제2호의 요보호아동"을 "「국내입양 활성화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제2호의 보호대상아동"으로 한다.

②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0조제5항 중 "「입양특례법」 제20조"를 「국내입양 활성화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」 제22조"로 한다.

③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제2항제25호 중 "「입양특례법」제20조"를 "「국내입양 활성화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」 제22조"로 한다.

제8조(다른 법령과의 관계)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「입양특례법」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.